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85
----------	-------

발의연월일 : 2026. 5. 15.

발 의 자 : 김민전 · 주호영 · 서명옥
김대식 · 배준영 · 최수진
이인선 · 조배숙 · 윤상현
나경원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2호까지에”를 “제33호까지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거나 같은 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거나 방송할 목적으로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3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

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영상 콘텐츠를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유통하거나 방송할
목적으로 기획·촬영·제작하
는 시설(「고등교육법」 제2
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
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